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4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년 11월 2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자치입법 활성화 및 의회 운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책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·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제3조)
-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자문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-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구정의 주요정책 발굴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조(기능)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, 정책의 연구·조사·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, 각종 의안 심사 시 자문, 그 밖에 의장이 의원의 의정활동 및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3조(위원회의 구성)에서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4조(위원의 해촉)에서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, 본인의 사임, 질병,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시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

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6조(위원회의 회의)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7조(자문)에서는 의원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 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,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안 제8조(의견청취 등)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,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.
 - 안 제9조(실비보상)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, 자문위원이 자문, 조사 ·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,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,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